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금융투자업 단계적 인가 지속 방침

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의 원칙적 유지와 더불어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업계의 수요를 감안한 추가적 인가를 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함.

-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증가 요인이 적고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에 대해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해왔으나, 그 동안의 신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「향후 인가방향 및 운용계획」을 마련
- 남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존, 장외파생거래,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(SIFI) 등에 대한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(G20·FSB) 진행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가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함.
- 이에 향후 인가는 회사신설·업무추가로 시장리스크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아야 하고,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해야 하며,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공정경쟁을 촉진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할 방침

□ 세부운용계획을 통해 기존 인가방침에서 허용한 업무와 향후 새로이 허용하는 업무에 대한 인가방향을 마련함.

- 기존 인가방침에서 허용한 업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인가 신청을 접수 하되, 부동산 단종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는 유보하기로 결정함.
- 향후 새로이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증권·장외파생 관련 원칙과 집합투자업·신탁업 관련 원칙을 신설하여 제시함.
 - 증권·장외파생과 관련하여 전문화·증권회사 신설 지침을 마련하고 동시에 허용 시 시장리스크 증가가 적은 장외파생업무에 대한 허용 원칙 등도 제시함.
 - 집합투자업·신탁업과 관련해서는 단종 집합투자업 신규인가 허용, 은행·증권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 인가 허용, 증권·보험회사의 신탁업 인가 허용 등의 원칙을 신설함.
 - 특히, 신탁업 인가 허용은 기존 인가방침에서는 퇴직연금 영위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나, 향후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을 예정

(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,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·자산운용과, 5/31)